

# 정년보장 교원임용심사위원회 규정

□ 제정 : 1998. 2. 23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고운학원 정관 제40조 제3항에 의거 정년까지 임용할 교수를 심사하기 위한 정년보장 교원임용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교무연구처장과 교수급 이상의 교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연구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제3조(임기)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심사기준) 정년보장대상교원에 대한 심사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하는바에 의한다.

제6조(관계자의 출석 및 자료제출)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에게 회의 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7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·날인한다

제8조(간사)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교무처 책임자급 직원으로 한다.

제9조(세부사항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